

평의원 선거규정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30조에 의거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한다)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3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)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4조 (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임무) ① 위원회는 평의원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을 선출하고 총회에 선거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되며 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선거결과는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다.
2. 위원장은 정기총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평의원 선거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
제 5조 (선출 평의원 수 결정) 선출 평의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조정 결정하며 이사회는 결정된 선출 평의원 수를 전임 평의원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.

제 6조 (평의원 후보자 명부작성) 위원회는 정관 제30조에 ②항에 의거하여 평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.

제 7조 (선출방법)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.

- ①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로한다.
- ② 위원회는 평의원 후보자 명부를 정회원과 고문, 참여회원(이하 각 회원이라 한다)에게 투표마감일 10일 전까지 공지하고 아울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- ③ 각 회원은 평의원 후보자 중 5인을 택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마감일까지 투표한다.
- ④ 득표 순위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한다.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일자가 빠른 자를 우선으로 선출한다.

제 8조 (당선자 확정 및 통보)

- ① 위원장은 선출된 후보자에게 당선을 통보한다.
- ② 선출된 후보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7조 ④항에 따라 차순위 후보를 선출하여 당선을 통보한다.

제 9조 (위원회의 의결 방법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위원회는 2/3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.

제 10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평의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1997. 11. 7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부 칙

